

카드사는 본인에게 이 약정서 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
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(이하 "여신거래기본약관"이라 합니다)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수
입
인
지

본인확인 및 인감대조	담당	책임자	부서장

여신거래추가약정서(기업용) (금액변경/기한연장/조건변경용)

하나카드 주식회사 앞

본인은 하나카드 주식회사 (이하 "카드사" 라 합니다)로부터 차입한 아래 여신의 거래 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신청하며, 기 약정내용에 추가 확약합니다

제1조 조건변경 하고자 하는 여신내용

업체명(상호)			사업자등록번호		
대출개시일	대출과목	대출금액	대출기간만료일	대출이자율	비고(보증내용 등)
년 월 일		금 원	년 월 일		

제2조 조건변경 사항(보증인교체·면제 포함, 해당사항만 기재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약정금액		
대출기간 만료일		
대출 이자율		
상환방법		
대출금리 변동주기		
이자지급시기 및 방법		
보증인 변경* * 연대보증인 필수 기재란 작성		
기타()		

변경 사유:

-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다
-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

20 년 월 일

본인	서명 또는 인
주소	
연락처	

인감 및 본인확인자	
직위	
성명	

담보제공자	서명 또는 인
주소	
연락처	

인감 및 본인확인자	
직위	
성명	

※ 이 약정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다른 담보 ·보증약정 과의 관계	①보증인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약정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으로 적용됩니다
	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카드사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,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
담보 등의 변경·해지 ·해제	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,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,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·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 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, 거래상 필요에 따라, 금융회사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·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

※ 보증인은 다음 사항을 알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(기재예시:1. 수령함, 2,3. 들었음)

1.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거래약정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?
2. 위 약관과 약정서 앞 뒷면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?
3. 채무자의 부채현황, 연체유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?

수령함	상담자(*직원 확인란)	
들었음	직위	
들었음	성명	(인)

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

[연대보증인이란?]

- 금융회사(채권자)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.
-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.
- 한편,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·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으며 또한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* 용어설명

- 최고의 항변권 :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.
- 검색의 항변권 :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 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.
- 분별의 이익 :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하나,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[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설명]

- 채무자의 부채현황, 연체유무등

[연대보증 종류에 따른 책임범위]

- 『특정채무보증』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, 그 채무가 연기·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- 『근보증』은 채무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 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게 되는 것으로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, 각 유형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『특정근보증』 특정된 거래계약(예: 년 월 일자 기업여신거래)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며,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보증합니다.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 하지 않습니다.

『한정근보증』 특정한 종류의 거래(예:기업여신거래)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 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보증하며, 그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보증합니다.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.